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중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용어 정비함(안 제6조,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7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표 7의2 등)
- 나.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제4항)
- 다.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법 제10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채용후보자”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2조 본문 중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

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제25조제3항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로,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순경”을 “경위 및 순경”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으며”를 “같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4 및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각각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

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각각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7조의2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각각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7제3항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7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제16조제3항제2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고, 제16조제3항제5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17세 이상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분야	시험별		시험과목	
경정	제3차		한국사, 영어, 행정법	
	제4차	필수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경위	제3차	일반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
		해양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순경	제3차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선택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비고

1.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 중 형사법, 헌법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정	경위	순경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PBT	PBT
		530점	490점	470점
		이상	이상	이상
		IBT	IBT	IBT
		71점 이상	58점 이상	52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제31조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등급	
	경정 · 경위	순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 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u>경찰</u> <u>간부후보생</u> 또는 <u>시보임용예</u> <u>정자가</u>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 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 우: 사망일의 전날	4. ----- <u>경위</u> <u>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u> --- ----- ----- -----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u>법</u> <u>제10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공</u> <u>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u> <u>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u> <u>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u>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u> <u>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u> <u>한다.</u>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u>법</u> <u>제10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u> <u>험</u>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

-----.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은 -----

-----.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1.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2.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3. (생략)

제25조(시험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생략)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

--. -----

-----.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험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

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 7. (생략)

② (생략)

제2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본문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

제29조(응시연령) ①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경위 및 순경 -----
-----)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삭 제>

제29조(응시연령) ① (현행과 같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
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
1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1세인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
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 2. (생략)

제3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

음)

<삭 제>

제31조(시험과목) -----

----- 같고, -----

----- 별표 4 -----

-----.

1. · 2. (현행과 같음)

제32조(출제수준) -----

-----.

1. 경위 이상: -----

생: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
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증
할 수 있는 정도

2.·3. (생 략)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
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체
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
법)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
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
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
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
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
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
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2.·3.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 채용시험-----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
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경찰공무
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2. (생략)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 7천원

4. (생략)

② (생략)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채
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
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
나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
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

-----.

제35조(응시수수료) ① -----
-- 채용시험-----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
----- 채
용시험-----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터 5년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
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37조의2(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점검) 시험실시권자는 경
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
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채용시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야 한다.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
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
게 한다.

----- 채용시험-----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점검) -----
----- 채용시험-----

-----.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채용시험-----

채용시험-----

-----.

1. ~ 7. (생략) ② 경찰공무원 <u>채용시험</u> 및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u><신설></u>	1. ~ 7. (현행과 같음) ② ----- <u>채용시험</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49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7제3항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연 락 처	(032) 835 - 2236